

## 「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」

- 국가·지역: 요르단
- 개정 일: 2017년 3월 30일

### 제1조

이 법은 「2017년 특허법에 대한 개정법」이라 칭하고 1999년 제 32호 제정법과 이에 대한 1건의 개정법과 함께 읽어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한다.

### 제2조

제정법 제2호 규정 중 (기록)에 대한 종전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기록: 발명 및 특허 등록원부

### 제3조

제정법 제7조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7조

가- 특허등록처의 감독 하에 산업무역부는 (발명 및 특허등록원부)라 칭하는 등록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등록부에는 발명 및 특허출원, 그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, 발급한 특허와 이에 대하여 발생한

법적조치 및 행위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고 이 경우 허가계약에 명시한 규정에 대한 비밀은 유지한다.

나- 특허등록처는 요르단에서 출원을 한 날 또는 발명의 상세내역 또는 발명에 관한 어떠한 도면이나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요약서를 포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날부터 18개월 경과 후 관보에 발명출원을 공고하여야 한다.

다- 공중은 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공포한 지침에 따라 발명 및 특허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.

라- 발명 및 특허출원서 및 이에 관한 정보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특허등록처에서 인증한 이에 대하여 추출한 자료 및 문서는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#### 제4조

제정법 제13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:

첫 번째: 제(다)항에 명시한 (이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) 문구를 삭제하고 (행정법원 그리고 특허등록처의 결정으로 최종자격취득 시 출원상태에 대하여 관보에 공고한다)로 수정한다.

두 번째: 제(라)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라- 출원인은 발명특허발급 전 자신의 출원취하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# 제5조

제27조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27조

가- 발명 또는 특허출원서는 대가가 있거나 대가가 없는 소유권 전체 또는 부분 이전, 저당권설정 또는 압류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나- 유산을 통하여 발명 또는 특허출원소유권 및 이에 관련한 기타 권리를 이전한다.

### 제6조

제정법 제28조 규정에 명시한 (특허소유권)표현을 삭제하고 (발명 또는 특허출원소유권)으로 수정한다.

### 제7조

제정법 제29조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29조

그 목적에 따라 장관이 공포한 지침에 의거하여 발명 또는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법적행위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.

### 제8조

제정법 제30조제(가)항에 제(4)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4- 특허소유자의 특허취소신청

### 제9조

제정법에 명시한 (고등법원)은 (행정법원)으로 수정한다.

2017/3/30